KOREAN

'보충적 형태의 보호'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됩니다

비시민자가 호주에서 수용국으로 이송될 경우 예상되는 필연적 결과로 그 비시민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실질적 근거가 있을 때

1958 년 이민법령 (Cth) 조항 36(2) (aa)

KOREAN - COMPLEMENTARY PROTECTION DEFINITION